

이달의 민변

97년 1·2월 합본호

-
- 특집 [북한 쌀보내기](#)
 - 자료 [국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
 - [노동변호인단 발족회견문](#)

이달의 민족

97년 1·2월 합본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례**변호사법**

호목집 150 · 1회

신년사 최영도 · 4

권두언 검찰총장의 헌법소원 - 김창국 · 6

특집

북한 쌀보내기 통일위원회 제안문 - 통일위원회 준비모임 · 10

민변의 북한 쌀보내기에 대한 보도자료 - 이형근 · 12

행정심판청구서 · 15

진술서 및 수사에 대한 입장 · 21

위원회 소개 노동위원회 · 31

회원의 변론경험담 어쩌다 의료소송을 하게 되어 - 최재천 · 33

해외회원 소개 센프란시스코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 박찬운 · 36

인권영화소개 「THE NET」의 경고 - 김기중 · 40

노동판례모니터링 추천인 제도 - 김도형 · 43

신입회원 소개 및 추천 ① 고태관 변호사 민변가입 추천의 글 - 김병주 · 47

② 민변에 가입하면서 - 장윤영 · 47

신참변호사가 신참변호사의 추천사를? - 김인희 · 48

③ 민변에 들어서며 - 오승진 · 49

사무국 보고 · 159

법무보호연 학우 드리지주

자료 ① 소위 문민정부에서의 국가보안법 남용사례 - 한택근 · 52

② 국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 - 서준식 · 61

③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 민변 · 68

④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보고 · 75

⑤ 선거비용 공개실사 정보공개 청구서 - 민변 언론위원회/공선협 · 83

⑥ 통합방송법 제정 제안서 - 민변 언론위원회 · 93

⑦ 영화진흥법, 공연법 개정의견서 - 민변 언론위원회 · 100

⑧ 청소년보호법안에 대한 의견서 - 민변 언론위원회 · 104

⑨ 아시아태평양 NGO인권회의 참가기 - 손광운 · 121

⑩ CUG 폐지 제안서 - 민변 정보통신위원회 · 124

⑪ 한총련관련 민사소송 소장 요약 - 배승현 · 127

⑫ 노동변호인단 발족회견문 · 141

⑬ 날치기관련 정보공개청구 · 144

⑭ 권영길위원장 업무방해 영장청구관련 위헌제청신청 · 148

⑮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 153

성명서 ① 정부의 노동법개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163

② 날치기통과에 대한 항의농성을 마치며 · 164

③ 날치기통과에 대한 변호사 성명 · 166

④ 권영길위원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민변의 견해 · 168

⑤ 날치기 항의 팜플렛 내용 전문 게재 · 170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정측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희망에 가득차야 할 이 새해를 희망하게 맞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 왔던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은 오히려 날치기라는 불법적 방법을 통하여 개악되었고, 안기부법 역시 우리가 요구했던 안기부의 수사권 전면폐지는커녕 과거 민주화운동 탄압의 주범인 안기부에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활시켜주는 쪽으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우리 민변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숙원이었던 비좁고 외진 사무실을 넓고 편리한 곳으로 이전하여 회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반상근 사무국장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소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시국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활동 외에도 겹친 수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북한쌀보내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연대활동과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연대활동,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활동 등 사회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타 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론 바 문민정권시대에 있다는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2·12 및 5·18 학살 책임자들에게는 관대한 처벌이나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그나마도 그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면설이 유포되고 있고, 8·15 연세대 집회와 관련한 한총련 학생들에게는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보다 더 가혹한 50%대에 육박하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쌀보내기운동도 온갖 방법으로 저지당했으며, 급기야는 노동관계법과 인기부법이 국민의 표에 의한 심판을 무시하고 야당과 무소속에서 18명의 의원을 빼어가 재석 과반수를 확보한 신한국당에 의하여 날치기라는 방법으로 개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민변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철야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굳은 의지로 이러한 반민주적 반개혁적 움직임들을 저지하고 우리 사회에 민주화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찌보면 우리 민변 회원들은 끝이 없는 길인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바위를 산으로 밀어 올려야만 하는 시지프스와 같은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갈망하는 완전한 민주사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민주사

회를 위한 기나긴 역정을 헤쳐 나가야 할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며, 우리 회원들은 모두가 그러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민변이라는 자율적인 조직에 가입하였으며, 어떤 고난이나 안락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신념을 갖고 있음을 믿어 의식치 않습니다.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커다란 정치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선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5년간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맡게 될 인물을 뽑는 올해의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언론들은, 차기 정권의 경쟁에 나서게 될 조직이나 인물들의 정강 정책이나 정책 수행 능력들을 제시하게 하여 국민들이 이를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하기는커녕, 몇몇 '대권 주자'들의 세력 패도나 지역 감정 등을 부추기는 보도들을 쏟아 내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김심' 운운하며 현정권의 낙점이 마치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핵심적인 변수인 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가 어느 폭력 집단의 우두머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세력 다툼이나 후계자 지명을 받기 위한 암투를 벌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보도행태들은 민주주의 정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 정권 경쟁에 나서는 정당이나 후보들의 정강 정책이나 이른바 '그림자 내각(섀도우캐비닛)' 등의 면면을 비교하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후보나 정당에게 투표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진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여 다시는 '낙동강에 염지손가락이 둑등 떠다니더라'라는 자조 섞인 말이 유행하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듣기 좋은 덕담이나 희망에 찬 축복의 말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시국 얘기로만 신년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다짐들을 올 한해를 맞는 각오로 되새김으로써 이 땅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요, 축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새해 정월 초하루까지도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앉아 철야농성을 해야만 하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짐들로 신년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시오

검찰총장의 헌법소원

김창국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최고위 간부 8명이 '검찰총장은 퇴직 후 2년이내에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개정 검찰청법의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제도여서 주로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랄 수 있는 검찰총장이 바로 그 공권력의 피해자라며 직접 헌법소원을 냈으니,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인의 홍미를 불러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만하다.

위 개정 검찰청법의 규정은, 야당이 내놓은 '검찰의 중립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여당이 수용함으로써 입법화된 것인데, 검찰 간부들은 그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이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두 가지 뿐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 및 당적 취득을 금하는 것이 공무담임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검찰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검찰총장을 역임한 한 개인의 권리가 제한받아도 되는 것인가의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법리논쟁은 접어두자.

검찰 간부들은 이 규정 자체가 검찰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 그들은 직속 상관인 법무부장관과 법리논쟁을 벌여야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에 찬 당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서 헌법정신에 투철한

법률가의 당당함을 읽기보다는 '감히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라고 발끈하는 오만함과, 자신들 검찰의 위상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깨닫지조차 못하는 심한 불감증을 본다. 혹시나, 검찰조직을 사익집단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노파심까지 갖게 한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을 벌벌 떨게 만든다고 해서 권위가 생겨나고,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단호함에서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은, 10년 세월에 5명밖에 나오지 않을 검찰총장 역임자의 권리주장보다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자성(自省) 그리고, 정치와 법치 사이에서 법치를 실천하려는 고뇌에 찬 검찰의 모습을 보고싶어 한다. 이웃 나라 일본 검찰이 자민당의 실력자 '가네마루 신'에 대하여 일본 정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까와 큐빈' 사건과 관련하여 구약식 처리를 하자 현직 삼婆로 고검장이 1992. 9. 29.자 아사히 논단에서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사법의 세계에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결국 '가네마루 신'을 탈세혐의로 구속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그 것이 일본의 정계개편으로 이어진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우리 검찰이 조직의 자존심과 권위보다는 나라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고, 정권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권익을 보다 중요시한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국민들은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낼 것이고, 국민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검찰의 권위는 저절로 피어날 것이다.

추락하는 권위에는 날개가 없다. 이번 헌법소원이 추락하는 검찰의 권위에 가속도를 붙여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북한 쌀 보내기

통일위원회 제안문

통일위원회 준비모임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지난 반세기간의 정권들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말로만 통일을 외치며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만 하여 왔다는 느낌입니다.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며 통일만 되면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은 통일의 주체가 될 수 밖에 없는 민족 구성원 개개인에게는 반대로 통일이 너무도 먼 남의 나라 이야기 이만한 무기력함을 심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에 같은 민족이 분단된 상태로 있는 국가는 우리 민족밖에 없으며 다른 국가임을 강요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념적 장벽도 이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있지만 통일이 우리 민족구성원의 의지나 준비와는 별다른 상관없이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여러 군데에서 들려 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통일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점에서부터 가장 효율적이며 우리 민족 구성원이 진실로 하나될 수 있는 통일과정은 무엇인가. 또한 통일 이후의 체제와 제도

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준비가 정권을 이루는 각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문제는 그것이 민족의 화해보다는 정권의 이해에 부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따라서 민족구성원 전부 화해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통일과정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재야단체나 학문기관과는 달리 법률전문가단체인 모임이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페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보다 더 현실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이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 법률가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통일준비를 함으로서만이 통일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에 하나 의외의 상황이 온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위원회 준비모임에서는 올해를 남북관계의 전전에 있어서 주체적인 교류를 통한 통일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상정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남북주민들간의 자발적 교류와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를 추동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과 여러 경제적, 제도적 인 문제들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북한주민 접촉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과 헌법 소원등 법률적 쟁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모임에서 추진한 북한 쌀보내기 정국으로 인하여 더욱 급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빨리 흡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일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현재상태에 있어서의 바람직하고 현실성있는 통일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일의 원칙과 이에 따른 제도적 방안 등을 검토하고 먼저 통일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일 통일의 예 등을 학습할 계획이며 이것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초빙강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쌀보내기 후속작업과 쌀보내기운동의 지원을 하고 여타 통일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은 당연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96년 상설위원회의 통폐합 과정에서 해산된 통일위원회를 재건하려는 것이며 회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그 이후 최초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열의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젊은 회원들이 발기자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통일위원회의 활성화는 시간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민변의 회원으로 통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분이나 혹은 다른 위원회에 적을 두고는 있지만 마음은 두고 있지 못하는 회원이 계시면 우리와 같이 하시길 권하며 위원회 회원들의 특별가입 심사없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은 97년 3월 말까지입니다.

통일위원회모임은 격주에 1회(수요일)를 기본으로 하되 1달에 한 번 이상은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친목도모를 위하여 저녁에 자리를 가지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임시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연변의 북한쌀보내기에 대한 보도자료

1. 경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96. 6. 10.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몇 해 동안 계속된 수재로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돋기 위해 자체 회원들의 모금을 통하여 북한 주민을 돋기로 결정하였다.

- 이후 1996. 8.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20만원을 모금하였다.

-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96. 7. 25. 통일원에 대하여 품목은 쌀이나 현금으로, 명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름으로 북한 주민을 돋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한적십자사에도 품목은 쌀이나 현금으로 한다면 기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 통일원은 이에 대해 1996. 7. 31.자 회신을 통해 '한적창구 단일화 및 쌀, 현금지원 불가' 방침을 알려왔고 대한적십자사는 8. 13.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금 및 쌀을 귀 모임 명의로 북한 수재민들에게 전달하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더 이상의 협조

는 어렵다고 보고 1996. 8. 23. 정식으로 통일원에 수재에 빠진 북한 주민을 돋기 위해 북한적십자사를 만나겠다는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접수하였다.

- 통일원은 1996. 9. 10.자 회신을 통하여 한적을 통하지 않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개별적 대북지원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민변의 북한주민접촉신청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위 회신은 1996.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접수되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96. 12. 12. 통일원의 위 조치에 불복하여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신청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북한주민접촉신청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1997. 2.을 시한으로 하고 있고 또 통일원이 현재의 방침대로 위 불허처분을 취소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 역시 오랜 시일이 걸리고, 통일원 등 정부와 마찰없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의 태도 변화를 막기 어렵다가는 북한 주민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통일원이나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수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돋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국제적인 인권단체

인 WCC를 통하여 북한주민을 돋기로 결정하고 1996. 12. 26. 그간의 모금액 1220만원 전액을 WCC에 기탁하였다. 물론 품목은 쌀로 한정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명의로 북한 주민을 돋는 것은 전제조건이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특히 3년간 계속된 북한의 수재로 인하여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돋는 것은 연말이면 어김없이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도우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말에 이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2. 배경과 의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돋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이나 체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 수재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이다. 정권이나 체제의 문제는 굶주림을 해결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굶주림, 기아의 문제는 정권이나 체제 이전의 문제이고 지금 북한은 식량문제로 인하여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 점은 이번의 김경호씨 일가족 탈북사태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우리가 돋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북한에 있는 김경호씨 가족과 같은 처지에 있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지 북한의 체제나 정권이 아니다.

- 우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수재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점이 있다. 우리는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돋기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병력을 파견하면서까지 지원한 바 있다. 아프리카 난민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이들을 구호하는 것이 인류애의 표현이요 인도주의의 요청이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이웃 동네에서 벌어지는 기아와 질병에 대하여 우리가 모른 척 한다면 이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일일 것이다.

- 지난 시기 북한은 남한이 수재를 입었을 때 쌀로 지원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에도 군량미 운운하는 얘기는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한을 도왔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남한이 돋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 북한주민돕기는 어려움에 빠진 북한 경제를 돋

- 북한의 주민은 또한 우리의 동포로서 진정한 동포로서, 그리고 통일이 되면 이땅에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므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한다.

- 북한과 남한이 분단된 지는 50년이지만 한반도에서 운명공동체로서 같이 살아온 것은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민족은 우방과 적군이 따로 없는 국제체제에서 가장 믿음직한 우리의 동료이다. 우리가 연변의 동포들을 속여 금품을 갈취한 것을 부끄러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의 한쪽이 떨어져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그 아픔에 동참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을 돋고자 하는 것이다.

- 북한 주민을 돋는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대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에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의 확산은 통일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실제 통일이 되었을 때 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다. 현재 통일이 머나먼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한 집에 같이 살 식구를 굶주리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가 덜컥 한 집에 살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집안은 화목하겠는가. 북한 주민은 통일이 되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동포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좌취하고 사기치고 얼려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실상 그 어떠한 인간도 이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인류역사의 소중한 교훈이다.

- 지난 시기 북한은 남한이 수재를 입었을 때 쌀로 지원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에도 군량미 운운하는 얘기는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한을 도왔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남한이 돋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 북한주민돕기는 어려움에 빠진 북한 경제를 돋

는 결과를 놓을 것이며 이는 통일 이후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기반이다.

• 한때 잠수함 사건으로 주춤하기는 했지만 북한주민을 돋는 것은 남한 사회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었다. 미국까지도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위와 같은 흐름에 동참하여 한반도,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목적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 사회정의의 실현인데 이는 남한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차원에서,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한반도 차원에서 진정한 인권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3. 1996. 12. 26자 「한겨레」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가. 민변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 돈을 모금하였으며 각 회원사무소의 직원들 중 자발적으로 모금에 협조한 일부 사람들이 이에 동참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보도 내용대로 사법연수생들 중 일부를 상대로 모금 하였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나. 보도 내용 중 민변은 이번 행동을 통하여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하여 도전하는 상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부분도 민변이 그러한 취지를 밝힌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번 사업의 의미를 그렇게 단순판단할 수는 없다.

다. 돈(쌀)을 보내는 경로에 대하여도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여 준 바도 없고 현 상황에서 확인할 수 없다.

4. 향후 예정

가. 우리는 성탄절을 전후하여 지원을 할 예정이고 이 방침은 현재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 한편 1996.12.26. 일부 조간에 보도가 나간 이후 통일원 인도지원국 국장으로부터 민변으로 연락이 와 현재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미회담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변의 이러한 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북미회담이 타결되어 상황이 변경될 때까지 민변의 사업을 민변의 사업진행을 일정기간 유보해주기를 희망하였다.

다. 민변은 이러한 희망에 대하여 당초부터 정부가 소위 창구단일화와 쌀 불가방침에 대하여 반대하였던 것이지 정부의 조치, 태도 전반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였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의사가 확인될 때까지 쌀보내는 작업을 현 수준에서 일단 묶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민변은 이러한 일정기간의 조치가 무기한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이며 늦어도 금년 말까지 정부(통일원)가 민변의 이 사업유보를 언제까지 유보할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유보가 해제될 조건인 상황의 변화가 무엇인지, 상황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책임있는 당국자의 확인을 요구하였다.

마.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이 있고 그 답변내용이 민변의 원칙과 모순되지 아니할 경우 민변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반면에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할 경우 민변은 즉시 예정된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2 명지빌딩 4층

대표자 회장 최영도

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임채균, 한택근, 윤기원, 김인희, 유효석

피청구인 통일원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북한주민 접촉신청 불허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1996.9.14.

심판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1996.9.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북한주민 접촉신청 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심판청구의 이유

1. 청구인은 1988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생겨난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청구인은 현재 약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청구인은 1995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수재로 북한 주민이 심각한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같은 동포로서 굶주림에 지친 북한 주민을 돋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자체적인 모금을 통하여 북한 주민을 돋기로 결정하고 약 1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모금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국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광범위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포인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지원하는데 인색한 태도를 취하는 점을 보면서 직접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품목을 쌀이나 현금으로 결정하고 가능한 한 통일원의 정식 허가를 얻어서 북한주민을 접촉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통일원에서는 대한적십자사로 창

구를 단일화하고 쌀이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1996.8.23. 정식으로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였고 이에 통일원에서는 1996.9.10.자 공문으로 이를 불허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 공문은 청구인에게 1996.9.14. 접수되었습니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북한주민 접촉신청과 통일원의 불허처분은 모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북한주민 접촉신청은 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것 이지만 통일원의 불허처분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다고는 하나 법률을 과대 해석하여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여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처분입니다.

3.1. 애초에 청구인이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이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주민 돕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은 우리와 빛줄을 나눈 동포이므로 진정한 동포에로서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하며,셋째, 지난 시기 남한이 수재를 당했을 때 북한 주민이 남을 도운 일에 대한 보답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넷째, 북한 주민을 돋는 것이 남북한 평화무드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한반도 차원에서 진정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식생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상의 목적은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였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서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로서도 이를 환영하면 환영하였지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합목적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예방하고 북한을 개방적인 국제사회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도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며 나아가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무드를 정착하는 데에도 북한 지원은 현시기의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북한을 지원하려고 하는 유엔의 결정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사실상 북한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세계적인 북한주민돕기운동에는 동참하면서도 청구인 등 한국의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의 북한 주민돕기 운동을 별다른 이유 없이 불허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 주민을 돋고자 어렵게 모금까지 벌인 청구인들의 노력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행정부가 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2. 통일원은 쌀 또는 현금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첫째, 정작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쌀이나 바로 쌀을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이므로 이를 지원하지 않고 밀가루나 분유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될 수 없고 둘째, 이미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는데 미국 등 많은 국가와 민간단체들이 쌀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 북한도 남한이 수재를 당하였을 때 쌀을 보내 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쌀이 전략적 의미를 띠고 있어 남북한 교역에서 제한품목으로 결정되어 있고 쌀을 보냈을 경우 군량미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쌀을 지원하는 것이 무조건 거부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기 북한에서도 남한을 지원한 적이 있고 다른 국가나 사회단체에서도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북한을 지원하는데 쌀이나 현금을 제외한 조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조치는 통일원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3.3. 통일원이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단일화한 것은 더 더욱 그 근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도 역시 민간단체에 지나지 않고 청구인 역시 민간단체입니다. 단지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구호사업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만 청구인과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경험의 여부가 청구인의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거부할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청구인으로서도 이미 품목은 쌀이나 현금으로,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대한적십자사에게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통일원에 직접 접촉신청을 하였는 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않는 것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할 수 없어 통일원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다시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을 비롯하여 세계에 많은 국가와 인류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구호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한적십자사도 역시 일개 민간단체에 지나지 않고 청구인 역시 민간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간단체인 대한적십자사가 대한민국이나 한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의 의사를 전부 대변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반관단체로 국민들 사이에 인식되어 있어 대한적십자사만으로는 수재로 어려움에 빠진 북한 주민들을 돋고자 하는 국민들의, 나아가 조국통일을 위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전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선 "남북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남북기본합의서 제17조)

하겠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어긋나며 나아가 이는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방해함으로써 조국 통일을 위하여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4. 이 사건 통일원의 불허처분이 근거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헌법과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국가보안법 등과 상충하는 법률로서 위헌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통일원의 불허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4.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법 제1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그 자체로서 현재의 남북한 교역관계를 정립하는 기본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용어를 정리하고 통신, 왕래, 교역, 협력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역무 등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법 제3조)라고 규정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헌법의 평화통일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즉 헌법은 '평화적 통일'이 민족적 사명이고(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며'(헌법 제4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제66조 제3항), 대통령의 취임선서 중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제69조) 등 평화통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그 자체의 한계로 헌법의 기본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북교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헌법 제75조 제1항) 하위 법령에 위임하도록 한 원칙, 즉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배치됩니다.

둘째,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다시 통일원 장관에게 재위임함으로써 재위임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이 결과 결국 고시에 의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이 포괄적 위임의 성격이 띠고 있어 결국 행정부의 재량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규정의 경우 거의 모든 조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남북한 왕래에 대한 증명서 발급절차 등 모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도 있으나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물품의 반출, 반입에 대한 승인, 협력사업자의 승인, 협력 사업의 승인 등 중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넷째, 남북한 간 교류, 협력에 대한 신축적 대응의 필요에 따라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아 법 치주의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째,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하는데 지나치게 절차가 번잡합니다.

여섯째,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3년 이하의 자유형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고 있는데(법 제27조, 제28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인 자유로운 왕래 및 교역이라는 원칙에 반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도 반합니다.

일곱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제30조에서 북한주민의제 규정, 즉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은 특히 통일을 위한 노력을 표명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모든 점을 종합하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표명한 헌법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오히려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지나친 규제로 이를 가로막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고 그 결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통일원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4.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기본 정신에 위배됩니다.

1991년 12월 13일 역사적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1992년 2월 19일에는 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된데 이어 1992년 9월 17일에는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분야별 부속합의서가 발효되고 각 분야별로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남북관계가 화해와 교류협력 단계로 발전될 수 있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에 체

결된 조약이 아니라 민족내부에서 체결된 특수한 합의로서 다만 남과 북이 상대방을 서로 국가로 승인하지 아니하는 통일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로 남과 북이 상호 육지적 국가승인을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외에는 국제법상의 조약으로서의 모든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재가로 발효되었지만 이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 국회의 동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 비준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무효의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남북기본합의서는 국내법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은 가지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의 규정 내용대로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또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제26조 제1항에서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 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 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1조는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잠정적 특수관계'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상호 외국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남북한간이 교역과 협력사업 등 경제교류를 추진할 경우 여기에 국가간 경제교류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용하는 것은 법리상 전혀 타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과 법률체계상 북한은 조국통일을 함께 해나갈 우리의 민족구성원이지 또 다른 국가는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역시 남북기본합의서에 비추어 볼 때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정신을 왜곡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4.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등 다른 국내법 체계와 충돌합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밝히고 있으나 국가보안법과의 관계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축면에 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위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모든 통일운동과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할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위 조항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남북한 간의 상

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법 제3조)이 외의 경우가 바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당연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되고 국가보안법은 이에 대한 특별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존립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범위'라는 것 자체도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없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고 따라서 행위자는 물론 법집행자조차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법집행당국이 추단하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고 그 사람이 정부당국 내지는 법집행당국의 이해관계에 순응하는 사람인가 아닌지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달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 이러한 결과는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똑같은 행위라도 사람에 따라 차별대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 하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구절이 삭제될 때만이 국가보안법과의 상충 성도 줄어들게 되고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4. 결론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헌법 등의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통일원의 이번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일원의 청구인에 대한 북한주민 접촉신청 불허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분을 한 행정행위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1996.9.14. 통지 받음
부록 1. 첨부 서류
북한주민접촉신청에 대한 회신 사본 1통
제9차 정기총회 회의록 1통
회칙 1통
조직과 임원 1통
연혁 1통
위임장 1통

1996.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임채균
한택근
윤기원
김인희
유효석

서울고등법원 귀중

진술서 및 수사에 대한 입장

- 검찰청 송부

경위서

제출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귀청의 본 모임 사무국장 백승현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내사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경위를 밝힙니다.

서울지방검찰청 (923호 주성영 검사) 귀중

경위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 간의 수재 등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쌀보내기와 관련하여 그 간의 진행사실과 의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경위를 밝힌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북한 주민 돕기를 위한 모금 경위에 대하여

가.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수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식량 부족 상태에 관하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되어 1996.6.10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동포인 북한 주민을 돕기로 하였다.

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회원들 대상으로 모금을 실시하여 1996.12.까지 1,220만원을 모금하였다.

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위와 같이 모금을 하면서 북한주민들에게 쌀을 보내는 방법으로 첫째, 적십자사를 통하는 방법, 둘째, 통일원에 교류신청을 하는 방법, 셋째, 미국 또는 교포를 통하여 보내는 방법, 넷째, 직접 제3국에서 쌀을 사서 보내는 방법 등을 상정하고 이를 검토한 다음 우선적으로 적십자사나 통일원을 통하여 정부의 협조아래 북한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북한주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기본 식량인 쌀이므로 원칙적으로 쌀을 보내기로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96.7.25.자로 통일원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다음 1천만원을 모금한 사실을 알리고 통일원을 통하여 쌀이나 돈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싶으니 협조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그리고 대한 적십자사(이하 한적)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접수시켰다.

바. 그런데 통일원은 1996.7.31.자 회신을 통해 '한적창구 단일화 및 쌀 및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알려왔고, 대한적십자는 8.13.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금 및 쌀을 귀 모임 명의로 북한 수재민들에게 전달하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사.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북한주민에게 쌀을 보내기 위하여 8.23. 통일원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북한주민 접촉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북한주민 접촉대상은 북한적십자사로 하고 접촉승인 신청자는 민변의 최영도 회장과 송두환 부회장, 백승현 사무국장과 김인희 회원이며 목적은 북한 주민을 돋기 위한 것이었다.

아. 그런데 통일원은 9.10.자 회신을 통하여 한적을 통하지 않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개별적 대북지원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했다.

위 통보는 9.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접수되었다.

자.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96.12.12.자로 위 통일원의 북한주민 접촉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차.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더 이상 정부의 협조 속에 북한 주민을 돋는 것

은 어렵고 그렇다고 행정심판의 결과나 그에 이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북한 주민을 돋는 것은 너무나 오랜 시일이 걸려 실제적으로는 북한 주민을 돋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민변은 위와 같은 법절차와 별도로 그 동안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여 온 것으로 알려진 WCC에 현금을 기탁하기로 하였다.

카. 1996.12.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북한 주민을 돋기 위해 현금을 WCC에 기탁하자 통일원 인도지원국 국장이 강릉 접수함침투사건에 관한 북미회담이 곧 타결될 것이므로 북미회담이 타결될 때까지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도지원국 국장은 위 북미회담이 타결되면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알렸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측과 굳이 대립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꺼이 위 요청을 수락하면서 다만 북미회담이 타결된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연말까지 정부측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만일 정부측의 답변이 없으면 북한 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타. 하지만 정부측은 북미회담이 타결된 이후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구체적인 답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발표한 대로 북한 주민을 돋기 위해 쌀을 보내기로 하고 1997.1.14. WCC측에 북한에 쌀을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북한주민돕기운동의 의의

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돋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이나 체제가 아니라 그 체제속에서 지금 수재로 짚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이다.

나. 우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재로 짚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은 갈수록 악화되어 외신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거나 지원이 부족한 경우 금년 봄에 대규모 아사사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 민족끼리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이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 북한의 주민은 우리의 동포이다. 우리는 진정한 동포애로, 그리고 통일이 되면 이땅에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같은 민족이므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한다.

라. 북한 주민을 돋는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대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에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의 확산은 통일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실제 통일이 되었을 때 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다.

마. 지난 시기 북한은 남한이 수재를 입었을 때 쌀로 지원한 경험이 있다. 그 당시에도 군량미 운운하는 애

기는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한을 도왔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남한 주민이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바. 북한주민돕기는 어려움에 빠진 북한 경제를 돋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는 통일 이후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사. 한때 잠수함 사건으로 주춤하기는 했지만 북한주민을 돋는 것은 남한 사회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었다. 미국까지도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위와 같은 흐름에 동참하여 한반도,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목적은 기본적 인권의옹호, 사회정의의 실현인데 이는 남한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차원에서,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한반도 차원에서 진정한 인권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4. 통일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한 북한주민접촉신청거부처분은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북한주민돕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은 우리와 핏줄을 나눈 동포애로서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하며, 셋째, 지난 시기 남한이 수재를 당했을 때 북한 주민이 남한을 도운 일에 대한 보답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넷째, 북한 주민을 돋는 것이 남북한 평화무드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한반도 차원에서 진정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식생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이상의 목적은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였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서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로서도 이를 환영하면 환영하였지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합목적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예방하고 북한을 개방적인 국제사회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도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며 나아가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무드를 정착하는데에도 북한 지원은 현시기의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북한을 지원하려고 하는 유엔의 결정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사실상 북한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전세계적인 북한 주민돕기 운동에는 동참하면서도 국내의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의 북한 주민돕기 운동을 별다른 이유없이 불허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 주민을 돋고자 어렵게 모금까지 벌인 민변의 노력을 봉쇄하고 있다.

이 점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행정부가 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통일원은 쌀 또는 현금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첫째, 정작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쌀이나 바로 쌀을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이므로 이를 지원하지 않고 식용유나 분유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될 수 없고 둘째, 이미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는데 미국 등 많은 국가와 민간단체들이 쌀을 직접 지원하였고 지금도 쌀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설정이다. 그리고 지난 시기 북한도 남한이 수재를 당하였을 때 쌀을 보내 준 경험이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북한주민을 지원하는데 쌀이나 현금을 제외한 조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조치는 통일원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 할 것이다.

다. 통일원이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단일화한 것은 더 더욱 그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도 역시 민간단체에 지나지 않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민간단체이다. 단지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구호사업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다를 뿐이다. 그러나 경험의 여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북한주민접촉신청을 거부할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서도 이미 품목은 쌀이나 현금으로, 명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대한적십자사에게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통일원에 직접 접촉신청을 하였는 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할 수 없어 통일원에 북한 주민접촉신청을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게 다시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을 비롯하여 세계에 많은 국가와 인류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구호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한적십자사도 역시 일개 민간단체에 지나지 않고 청구인 역시 민간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단체인 대한적십자사가 대한민국이나 한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의 의사를 전부 대변할 수는 더욱 없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반관단체로 국민들 사이에 인식되어 있어 대한적십자사만으로는 수재로 어려움에 빠진 북한 주민들을 돋고자 하는 국민들의, 나아가 조국통일을 위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전부 담을 수가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선 “남북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남북기본합의서 제17조)하겠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어긋나며 나아가 이는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방해함으로써 조국 통일을 위하여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다.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및 남북기본합의서위배부분에 대하여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법 제1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그 자체로서 현재의 남북한 교역관계를 정립하는 기본 법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법은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용어를 정리하고 통신, 왕래, 교역, 협력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역무 등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법 제3조)라고 규정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헌법은 특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시대의 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모든 법체계와 정부의 조직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헌법은 '평화적 통일'이 민족적 사명이고(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며'(헌법 제4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제66조 제3항), 대통령의 취임선서 중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제69조) 등 평화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그 자체의 한계로 위와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남북교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헌법 제75조 제1항) 하위 법령에 위임하도록 한 원칙, 즉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배치된다.

둘째,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다시 통일원 장관에게 재위임함으로써 재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 결과 결국 고시에 의하여 관계법령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이 포괄적 위임의 성격이 띠고 있어 결국 행정부의 재량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규정의 경우 거의 모든 조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남북한 왕래에 대한 증명서 발급절차 등 모범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도 있으나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물품의 반출, 반입에 대한 승인, 협력사업자의 승인, 협력사업의 승인 등 중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된다.

넷째, 남북한 간 교류, 협력에 대한 신축적 대응의 필요에 따라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아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

다섯째,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하는데 지나치게 절차가 번잡하다. 여섯째,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3년 이하의 자유형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고 있는데(법 제27조, 제28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인 자유로운 왕래 및 교역이라는 원칙에 반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도 반한다.

일곱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제30조에서 북한주민의 제 규정, 즉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은 특히 통일을 위한 노력을 표명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이상의 모든 점을 종합하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표명한 헌법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오히려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지나친 규제로 이를 가로막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고 그 결과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통일원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

1991년 12월 13일 역사적인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1992년 2월 19일에는 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된데 이어 1992년 9월 17일에는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분야별 부속합의서가 발효되고 각 분야별로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남북관계가 화해와 교류협력 단계로 발전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이 아니라 민족내부에서 체결된 특수한 합의로서 다만 남과 북이 상대방을 서로 국가로 승인하지 아니하는 통일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로 남과 북이 상호 묵시적 국가승인을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외에는 국제법상의 조약으로서의 모든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재가로 발효되었지만 이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 국회의 동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 비준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무효의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남북기본합의서는 국내법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또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제26조 제1항에서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 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 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는 "선판,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잠정적 특수관계'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즉 상호 외국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남북한간이 교역과 협력사업 등 경제교류를 추진할 경우 여기에 국가간 경제교류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용하는 것은 법리상 전혀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과 법률체계상 북한은 조국통일을 함께 해나갈 우리의 민족구성원이지 또 다른 국가는 아니다. 이런 면에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남북한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나 접촉을 방해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정신을 왜곡하기까지 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점에서 통일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한 북한주민접촉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하여 수사를 강행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못하다.

6. 사무국장에 대한 소환에 대하여

가. 1997.1.14. 민변이 중단되었던 쌀보내기를 재개하자 서울지검에서는 우리 모임의 사무국장인 백승현 변호사에 대하여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한 바 있다.

나. 이에 대하여 본 모임과 백승현 변호사는 입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것인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 또한 이번 일은 백승현 사무국장 개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민변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결정한 것이어서 민변 명의로 이에 답변하는 바이다.

7. 민변으로 한 쌀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

8. 이상의 내용 이외에는 현 단계에서 밝힐 것이 없으며 내사사건에서 사무국장 등 민변 회원들이 수사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1997. 1.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영도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검찰의 쌀보내기 수사에 대한 민변의 입장

1. 검찰의 수사경과

가. 1997.1.14. 민변은 그동안 통일원의 요구에 의하여 잠시 중단하였던 북한 쌀보내기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돋기 위하여 자체 모금한 1,220만원을 WCC에 기탁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결정이 1.15. 언론에 보도된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주성영 검사는 민변 사무국장인 백승현 변호사에게 당일 오후 출석할 것을 전화로 요구하였다. 이에 백승현 변호사는 입건된 것인지 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화 소환에 대해서, 또한 개인의 일이 아닌 민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소환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개인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님을 밝히고 다음 주 초 예정되어 있는 민변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주검사는 집행위원회가 끝난 후 그 결정사항을 연락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민변의 입장

가. 민변은 정식으로 입건되었다는지 조차 밝히지 아니한 채 전화로 소환하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며 검찰에 백승현 변호사가 정식

으로 입건된 것인지, 입건되었다면 무슨 혐의인지, 그에 대한 소환이 참고인으로서인지 피의자로서인지 를 먼저 밝힐 것을 요구한다.

나. 민변은 이번 사업이 단순히 민변 차원에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 속에 이루어져야 할 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상황의 변화가 생기는 즉시 보도자료를 제출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민변은 이번 사업에 대해 하나도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생각도 없다. 모든 내용은 국민들에게 공개 할 것이다.

다. 이번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언론에서 사무국장인 백승현 변호사가 소환에 응하였다느니 수사를 받고 있다느니 하면서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또한 1.17. 오후에 또 다시 소환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보도자료 배포시까지 소환요청을 받은 바 없음을 밝힌다. 언론은 정식의 소환 등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실확인 없는 보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백승현 변호사는 검찰이 입건 여부 등을 밝혀 정식으로 소환을 한다면 민변 내부의 의사결정기구의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3. 북한 쌀 지원에 관련한 민변의 견해와 그간 경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우선 민변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쌀을 허락하지 않고 대한적십자사만을 통해야 한다
는 정부의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
다.

나. 민변은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기 위해 통일원과 대한적십자사에 최대한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차례 밝혀왔다. 공문으로 그 의사를 터진하였고 정식으로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으므로 민변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 민변은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불허한 통일원의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라. 민변은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불허한 통일원 조치의 근거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나치게 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남북한 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가로막고 있어 1992. 4.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나고 평화적 조국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민변은 이 점을 중심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투어 나갈 것이다.

마. 일부 종교계와 사회단체들이 끊주립에 시달리
는 북한주민을 지원하였다는 점은 이미 공공연한 사
실이다.

바. 더구나 민변은 북미회담이 타결되어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이번 사업을 추진하여

다. 통일원 인도지원국 국장의 요구에 따라서 그 기간을 유예하기도 하였다. 민변으로서는 정부의 입장 을 난처하게 한다든가 정부와 싸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4. 민변은 이번 검찰의 수사 속수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민변의 사업은 지극히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즉각 철회될 것을 기대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는 한 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민변 전체에 대한 수사임을 명백히 하고 당당히 응하면서 민변 전 체 회원의 힘을 모아 북한주민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에 대응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귀중

위연회 소개

노동위원회

이 런에 기재된 글들은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의 사업이나 위원회 영역의 정점사항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는 '노동위원회' 관련 글을 게재합니다.

노동위원회 소개

1. 노동위원회 구성 현황

노동위원회는 민변 1996년도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조직을 개편하여 이원재 회원이 위원장을, 김도형 회원이 간사직을 맡게 되었고, 위원으로는 이원영, 이오영, 김갑배, 김선수, 문병호, 박수근, 이재명, 차지훈, 전해철, 김기열, 김동균, 이상호, 김남준, 문한성, 정태상, 남성렬, 천낙봉, 김우진, 이인호, 김인희 회원 등 총 22명의 회원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모임은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식사를 겸하여 열리고 있고, 지방 회원들의 참여를 위하여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저녁 시간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 1996년도 활동 개관

1996년 한해 동안 노동관계법 개정 국면을 맞이하여 노동위원회는 매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타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노사관

3. 향후 과제 - 전국적인 노동변호단 조직 구성

노동위원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을 필두로 한 법원의 노동사건에 대한 반노동자적 태도에 절망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확보를

어쩌다 의료소송을하게되어

최재천

I.

변호사를 택하게 된건 순전히 법조의 여러 직역중에서 변호사가 가장 자유스러울 것이라는 오해때문이었다. 1993년 개업한 이후 '개인사업자'로서 경영에 신경쓰랴, 송무에 신경쓰랴 하다보니 일년이 훌쩍 지나갔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다보니 자유는 웬걸, 도리어 반자유만 늘어갔다. 그즈음 사람들을 만나 새로이 인사를 나눌 때면 색다른 괴로움이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명함을 받아들면 어느 분야를 전문으로 하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었다. 이제 개업 1년차가 무슨 전문분야가 있었겠는가. 그럴 때마다 우물쭈물하며 질문을 받을 무렵 상담이 있었거나, 송무나, 판결이 있는 등으로 인해 쉽게 떠오르는 분야를 마치 전문분야인 것처럼 대답하곤 하였다. 하지만 늘 답답한 마음이야. 그렇다고 전문분야를 가질만한 특별한 관심이나 전문지식도 없었고, 설사 전문분야를 갖게 되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만한 자신도 없었다.

도저히 전문분야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쯤 아끼는 후배가 의료사고가족연합회라는 의료사고 피해자 단체가 있다며 한 번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왔다. 그때쯤 의사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는데, 이들과 의료사고에 관련된 사소한 문제들을 토론하며 차츰 의료과실소송을 전문분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먼저 법조계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다. 변호사들 중 의료과실소송을 전문분야로 생각하고 송무활동을 하는 분은 고작 두세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의료사고 피해자단체 사람들을 만나 피해자현황 등에 대한 여러 자료를 입수하였다.

몇날을 고민한 끝에 아직 남들이 손을 대지 않은 분야라 할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전문분야라고 어느 정도 멋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거라는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 없는 노동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러한 고민을 공유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노동변호사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공동활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법률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변호사를 주축으로 모임의 축지에 동의하는 노동실무가, 학자, 활동가들을 망라하는 조직을 구성하기로 하고, 주요활동 과제로는 노동판례의 수집 및 비판, 노동전담 재판부와 노동사건 담당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에 대한 개인별 자료수집 및 활용, 재판부에 대한 다양한 압력 수단의 개발, 공동기획소송, 정보교류 및 활동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 개최, 연 2~4회 기관지 발간 등을 정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민변에 제출한 설립제안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변 노동위원회의 활동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고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대 의견에 부딪쳐 별도의 새로운 전국적인 노동변호사 조직을 구성 작업이 현실적으로 별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동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이외의 활동가들이 민변 내로 수용되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단지 사후적인 변론 활동으로만 노동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전국적인 조직 구성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바, 이에 노동위원회는 그 준비를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조직 구성에 동의하는 회원들이 그 조직이 구성되면 민변 활동은 포기한다거나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변호사 조직으로서의 민변 활동과 노동운동의 한 분야로서 노동변호단 활동은 충분히 양립가능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다른 회원들의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생각.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돋는다는 생각 등 몇 가지 소박한 생각을 끌어모아 의료과실소송을 전문분야로 선택하는 근거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는 공부를 시작하였다. 의사친구들을 만나 닥치는 대로 묻고, 하급 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의료소송 판례를 100개 이상 찾아내어 읽고 요약하였으며, 재판자료집, 법원실무제요, 각 대학 학위논문 등을 읽어나갔다. 그리고 사건이 있어야만 하였기에 만나는 대로 소문을 냈다. 의료소송한다고. 마지막으로 불안한 건 역시 실력이었다. 타개책으로 간호사 출신 사무장을 구하기로 하고 한겨레 신문에 광고를 내어 채용하였다.

그로부터 한참 뒤인 1994. 가을께쯤, 첫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다. 산모가 4.5킬로그램이나 되는 거대 이를 분만하던 중 난산과 과다출혈로 인해 아이는 뇌성마비 상태가 되고 산모도 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뇌에 치명적 손상을 입은 사건이었다. 편할이 춘천이었지만 의사라고는 생각에 무작정 수임하고는 증거보전 절차부터 밟아나갔다.

강원도 홍천의 산부인과병원으로 증거보전을 나가니 그야말로 찬밥신세였다. 의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의사의 친정아버지라는 70세 노인이 나와 투덜대며 2층 계단 밑의 구석방으로 우리를 안내한 다음 무작정 기다리게 하였다. 한참 후 의사가 나타나 대단히 기분나쁜 어투로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무슨 소송이냐"는 식이었다. 어쨌든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영문투성이의 진료기록을 아는척 넘겨 보며 눈짐작으로만 위조나 변조여부를 살펴보고 빠진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복사를 해 오게 되었고, 이를 번역한 다음 그것을 기초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대한의사협회소속 소아과학

회 및 산부인과학회에 되지도 않은 질문을 끌어모아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전원(轉院)병원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산모의 시누이를 중인으로 신청하여 중인신문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중인신문에서 도대체 무엇을 물어야 할지조차도 몰랐다. 그저 일반사건의 중인처럼 묻다 보니 입증에 필요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었다. 분만 이야 가족의 출입이 차단된 분만실 내에서 피고측 당사자인 의사와 간호사만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중인도 아는게 거의 없었던 것이다. 중인에 대한 피고측 대리인의 반대신문을 들으며 내가 큰 실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수십번하였다. 그리곤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면서부터 몇 달간을 내가 괜히 의료소송을 선택했구나 하는 자괴감에 수백번 괴로워하였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의학공부를 하게 되었다. 의사들이 기본교과서로 삼는 '소아과학', '산과학' 책의 관련부분을 읽었고, 전원병원 기록인 홍천종합병원과 원주의료원기록을 간호사출신 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분석시켰다. 재판은 2년 이상을 끌어갔고, 준비서면만도 A4용지로 500페이지 이상을, 그리고 증거자료로 약 1,000페이지 이상을 제출하였다. 그러니까 단행본 한 권 이상을 써낸 셈이었다. 상대방 주장은 늘 그렇듯이 아이는 선천성이라는 것, 산모에 대하여는 자신들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출혈사고였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분만실에 있었던 간호사들을 중인으로 내세워 입증하려고 하였다(의료사고의 피고되는 모든 의사들은 늘 이런 식이다. 첫째는 선천성 주장, 둘째는 원인불명의 특발성 주장, 셋째는 특이체질, 넷째는 현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 네 가지 주장이 항변의 전부이다).

신체감정은 그런대로 만족할만 하였다. 사실조회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의사들이 답변하는 식이라 취할 만 한 게 거의 없었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인지 너무나도 명백한 부분에 대하여도 잘 모른다

거나, 이럴 수도 저절 수도 있다라는 면책성 회신, 그리고 회신이 오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현실이 너무도 답답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 우리 주장의 핵심은 첫째, 피고가 산부인과전문의로서 산전 진찰을 게을리하여 거대아임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둘째, 분만중 거대아 또는 아두꼴반불균형이 나타나는 진행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유도분만을 강행한 과실, 셋째, 태아가 태변을 흡입하고 청색증까지 보였음에도 분만 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넷째, 산모에 대해서는 분만태아가 거대아인 이상 당연히 회음부 파열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출혈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 신속하게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 과실 등을 주장하였다.

의료소송을 하면서 꿀치아픈 것 중의 하나는 재판부 또한 진행절차나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우선 재판부를 초보적인 수준에서부터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의 의학계의 일반상식에 가까운 사항마저도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하였고, 거기에 맞추어 의학교과서나 논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만 하는 일이 불편하였다. 더구나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재판부가 세 번이나 바뀌게 되었고, 그때마다 분만절차 및 분만의 특수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피고의 과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다. 지금도 농담처럼 다른 변호사들에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의료소송은 피고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와 다투는 느낌이 드는 특수한 소송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리고 각 당사자 및 재판부가 생각하는 쟁점이 쉽게 정리되지 않고 서로 각자의 주장만 늘어놓거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만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피고의 막무가내식 주장이 있고나면 재판부에서 혼들리게 되고, 그러면 원고는 또다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이해시켜야만 하고, 이런 식의 과정이 반복되었고, 불필요한 변론만이 계속되게 되었다

(물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은 거의 해결되어졌다). 이 사건의 경우가 특히 그랬다. 우선은 내가 미숙한 상태였으니까.

소송을 시작한지 무려 2년반 이상이 걸린 1996. 9. 경 원고에게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비록 중앙지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방 일간지에는 사회면 톱기사로 취급될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었고, 당사자의 감사표시는 한량없었다. 하물며 변호사로서의 기쁨이야.

IV.

현재 이 사건은 항소되어 오는 3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게 된다. 하지만 사건의 쟁점이 충분히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으며,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도 부합되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형편이다. 이 사건 이후로 의료사고를 수행한 것이 50여건이 넘게 되었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의료소송이 나의 전문분야임을 이야기하곤 한다. 최근에도 몇 개의 새로운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함에 따라 판례정리의 필요성을 느껴 법조인이나 의료관계자 및 일반인을 위한 실사례 위주의 안내서를 집필하고 있으니 어쨌든 나에게 있어 의료소송이 차츰 전문분야가 되고 있는 것은 맞는 모양이다. 이제와 둘이키면 당시 의료소송을 선택한 것은 참으로 무모한 선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의료소송이 이토록 인내와 끈기가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소송인줄 알았더라면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거기다 거의 모든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다보니 경제적인 실의도 문제가 되고…

하지만 전문분야라는 이름으로 선택한 의료소송 속에서 어느덧 내자신 스스로 참된 의미의 자유를 느끼고 있다면 도리어 역설일까.

샌프란시스코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박찬운

자정이 넘어가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커튼을 열고 창밖을 보니 멀리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야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골든게이트브리지의 유연한 자태도 한 눈에 들어옵니다.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평화스럽습니다. 이렇듯 미국, 그리고 이 곳 샌프란시스코는 이제껏 제가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움과 평화를 매일매일 선사합니다. 아니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들을 때마다 저의 이러한 생활이 얼마나 한량한 짓인지,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지…… 가끔은 오늘 밤같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뒤틀리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행 비행기를 탄 지 어느덧 반년. 때로는 이 결심이 정말로 객쩍은 만용은 아닌지하는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로하여금 이 곳 미국까지 그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앞날의 도전을 감수하면서까지 오게 하였는가. 제가 국제사건이나 취급하는 그런 비지니스로이어라면 미국유학은 하나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이해될터인데 그동안 저의 경력은 그와는 관계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유학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에서 전망이 있는 비지니스로를 미국에서 공부하겠다는 특별한 결심을 한것도 아니므로 누구나 저의 유학은 예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의 유학은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유학과는 판이한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반 년간의 미국생활은 그저 시간 낭비, 돈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미국을 한 번 철저히 연구해보자는 의욕과 사명감이 넘친 기간이었습니다. 그 덕에 아직 많은 경험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 관찰은 어디까지나 아마추어리즘의 유치성을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민변의 동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국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 와서 확실히 느낀 것은 미국은 역시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라 우리와 같이 끈끈한 정이나 인간관계는 애당초 찾아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자세히 미국인들을 살피면 미국인들은 고독하고, 고독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개인주의의 본질을 저는 고독이라고 판단합니다. 인종이 다양하고 같은 인종일지라도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달라 우리와 같이 친근한 친구사이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며칠 전 미국친구가 집을 이사하였다고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들이파티(House warming party)에 초대되어 가보았습니다. 그 집주인과 친한 30여명의 친구들이 모여 파티를 하였는데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다정하게 만나 음식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도 우리와 같은 끈적끈적한 것은 어디를 보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우리처럼 한자리에 앉아 주거나 받거나 하는 식의 식문화가 아니고 집안 내에서 걸어다니며 이야기상대를 찾아 다니는 미국의 파티문화는 개인주의가 만든 전형적인 생활습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고독한 개인주의는 본질적으로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다보니 사람과 사람들은 꼭 할 말만 하게 되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많은 말로써 해결하기보다는 간단히 를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법이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의 아이를 통하여 발견한 미국어린이의 개인주의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신기합니다. 우리아이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상당히 고생을 하였습니다. 키가 크고 빼어난 미모(?)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로부터 허구현날 놀림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얼어맞고 오는 일까지 있어 집에 들어올 때가 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없었는지 근심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아침이 되면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께나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부터는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니 꼭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한 일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곳에 와서 한 번 이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아이도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학교는 과거에 비해 한국학생수가 많아 자연히 학교에 가면 한국학생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진 모양입니다. 그러나 보니 한국학생들과 가끔 말싸움을 하는 모양인데 이곳에서도 한국학생 이외의 학생과는 아직껏 한 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

대체 왜 미국학생들은 학교내에서 우리의 아이들에 비해 친구들과 싸움을 하지 않는가. 원래부터 순하기 때문에? 그것은 친구 사이가 우리와는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와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우리아이의 학교는 약40%의 학생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음). 어떤 친구와는 인종적으로 달라 무엇인지 모르는 서먹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아도 우리처럼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노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있다면 인종적으로 같은 아이들끼리 다니는 경우는 있음). 아침이면 부모들이 데려다주고 공부가 끝나면 부모가 와서 그대로 데려가니 우리처럼 학교를 오가며 운동장에서, 학교주변의 오락실에서 시간을 보낼 기회는 거의 전무합니다(학교주변에 그런 시설도 전무하지만). 사정이 이렇다보니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도 힘이 드는데 싸움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니 커서도 대체로 인간관계라는 것이 비슷하여 미국의 고독한 개인주의는 사회를 지배하는 일종의 생활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학교에는 학부모가 참여해야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학교에 가는 일이 많은데 한국같으면 좀 빠지고 싶어도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별 것 아닌 데도 학부모들의 참여는 께나 열성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관찰해보니 역시 개인주의가 정답입니다. 참여를 하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친근하게 연락을 해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사정들이 자연스레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개인주의를 경험하면서 보게 된 한 가지 재미있고 부러운 것이 언론의 보도태도입니다. 미

국의 고독한 개인주의는 남을 비판하는 것을 아주 용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언론에서 특정인을 비판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하나의 금기 인데 미국은 이러한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비판문화는 특히 선거철이 되면 언론에 따라서 재미있는 기사나 사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뉴욕타임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 선거철에 이 신문이 낸 사설이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가지 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2일자 뉴욕타임의 사설은 뉴욕주의 하원과 시의원선거에 관한 사설을 실었는데 다음은 그 일부입니다.

"23번가, Queens: 공화당의 Douglas Prescott가 지난 16년중 14년간을 이 지역을 대표하였다. 그는 지역구 활동에는 활발하였으나 의회 내에서의 활동은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가 뒤늦게 의정활동을 꽂피우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그의 상대방인 노인문제 전문가인 젊은 변호사, 민주당의 Ann Carrozza를 지지한다(이 부분에서 뉴욕타임은 "prefe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그녀는 정치에는 신인이나 정력을 가진 유능하면서도 바람직한 의원으로서 헌신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신문의 이날 사설은 7개의 선거구를 특정하며 각 선거구마다 후보자를 열거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명백한 지지(지지를 나타내는 또 다른 용어는 "endorse"임) 혹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양쪽이 능력이나 성향이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런 때는 보통 뉴욕타임의 경우 현역의원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식의 수사(修辭)를 사용합니다.

"xxx는 참으로 능력있으며 그의 경력은 흠이 없다. 그러나 그의 상대방 xxx는 아직 그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 물러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xxx가 다음 번 선거에 출마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는 xxx를 지지하는 바이다"

저는 이러한 신문의 태도를 보고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우리의 신문과 같이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듯 한 애매모호한 자세보다는 자신의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독자를 확보하는 이들의 자세를 한 번쯤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거나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언론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200년 이상 신문의 역사가 있고, 그동안 황색저널리즘에도 시달렸으며 특정기사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어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를 심판 받은 적이 있기에 오늘의 미국 언론이 있는 것이지 어느날 갑자기 오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의 언론도 무엇인가 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는데서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수언론은 보수언론으로서 정론을 걷고 진보언론은 진보언론으로서 정론을 걸어가면서 독자는 자신의 취향과 정치적 색채에 따라 언론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바로 민주국가의 모습, 장차 우리 나라의 밑그림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미국 언론을 법률가의 눈으로 보면서 발견한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법률관계 기사의 완성도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기자, 특히 법조전문 기자의 수준은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아마도 대부분 법조전문 기자는 로스쿨 졸업자일 것입니다). 한국에도 너무나 잘 알려진 OJ Simpson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원의 판결을 취급하는 기사는 그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의외로 평이한데 그 이유는 기자가 그 사건의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합니다. 요즈음 심슨사건의 민사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보면 원고 측의 증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것이 무엇을 입증하려는 의도인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중의 주요 부분은 문답 내용을 일일이 묘사하면서 이것

이 과연 어느 쪽에 유리한 증언이 될지는 예상하기도 합니다.

올해 법원관련기사로 뉴욕 타임과 뉴스위크가 보도한 것을 보면 법률 공부를 하는 이곳의 외국 법률가들의 사이에서도 대단한 흥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간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 있는가 하는 문제가 올해 그리고 내년 미국 사회에 비상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말기적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지(예컨대 환자에게 극약 처방을 하는 식으로)가 문제입니다. 종래 안락사(식물인간의 상태에서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는 것)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미국의 법원은 허용을 해 왔는데 이것과 위의 말기적 환자가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의사가 도와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올해 미국의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두 곳의 연방 항소법원에서의 판결은 안락사와 다른 점을 발견하기 힘들다면 이러한 일을 금지하는 주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이것이 현재 대법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여름 전후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보안 처분 관련 사건인데 아마도 이 판결이 나오면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국에서는 요즈음 성폭력에 대한 특별법을 각 주마다 만들어 그 형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예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주에서는 특정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형기가 종료된 후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이것도 배심재판임) 위험인물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률(대표적인 주가 캔ساس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심리중입니다. 법의 적정절차(Due Process)에 이들 법률들이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

장입니다. 얼마전 뉴욕 타임의 기사는 대법원의 심리과정이 자세히 보도되었는데 여기에서 대법관들이 이 법률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정도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우리도 법조 기사가 이렇게 일반 독자에게 밀착하기 위해서는 기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변회원 중에서 혹시 뜻 있는 회원이 변호사업을 폐하고 언론사에 취직하는 것은 어떨지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레 애국자가 되어 갑니다. 저에게 있어 하나의 회수가 있다면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선진국으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지만 하나의 원론은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우리를 지배해 온 봉건적인 권위주의, 연고주의의 사슬을 끊고 우리 사회를 합리적인 생활철학과 원리원칙이 지배이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시작하여야 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교인 실태를 풀어 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겨울이어야 할 지금 이곳 샌프란시스코의 밤하늘은 너무나 청명하고 살결을 스치는 바람은 싱그러운 미풍입니다. 커튼 너머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 그리고 그 옆으로 펼쳐지는 골든 게이트의 수려한 자태를 매일 볼 수 있는 것만도 어린 시절 꿈의 절반을 현실로 만든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가슴 속 어디에선가는 고독의 물결이 물밀처럼 밀려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